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799-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단법인 대한엘피지협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4-82-07711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7(방배동, 청진빌딩 5층 501호)																																																						
	대표자	이호중																																																						
확인내용	명칭	농어촌·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실증																																																						
	주요내용	LPG 기반시설이 적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를 설치하여 간이충전소를 조성하고, LPG 자동차 충전 실증을 통한 안정성 및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제51조, 별표4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구역	전라남도 10곳, 경상북도 3곳, 강원도 3곳 총 16개소 실증총괄 < 실증사업 예정지 >																																																						
		<table><tr><th>No.</th><th>사업부지 후보</th><th>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th><th>실증총괄</th></tr><tr><td>1</td><td>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td><td>㈜청해진주유소</td><td rowspan="16">대한엘피지협회</td></tr><tr><td>2</td><td>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td><td>㈜청해진주유소</td></tr><tr><td>3</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4</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5</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6</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1103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7</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td><td>㈜청해진주유소</td></tr><tr><td>8</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td><td>㈜청해진주유소</td></tr><tr><td>9</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td><td>㈜청해진주유소</td></tr><tr><td>10</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td><td>㈜청해진주유소</td></tr><tr><td>11</td><td>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2</td><td>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3</td><td>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68-3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4</td><td>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r><td>15</td><td>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r><td>16</td><td>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able>		No.	사업부지 후보	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	실증총괄	1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	㈜청해진주유소	대한엘피지협회	2	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	㈜청해진주유소	3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	미래LPG충전소	4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	미래LPG충전소	5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	미래LPG충전소	6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1103 일원	미래LPG충전소	7	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	㈜청해진주유소	8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	㈜청해진주유소	9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	㈜청해진주유소	10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	㈜청해진주유소	11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2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3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68-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4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	신일충전소	15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	신일충전소	16	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	신일충전소
	No.	사업부지 후보	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	실증총괄																																																				
	1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	㈜청해진주유소	대한엘피지협회																																																				
	2	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	㈜청해진주유소																																																					
	3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	미래LPG충전소																																																					
4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	미래LPG충전소																																																						
5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	미래LPG충전소																																																						
6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1103 일원	미래LPG충전소																																																						
7	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	㈜청해진주유소																																																						
8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	㈜청해진주유소																																																						
9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	㈜청해진주유소																																																						
10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	㈜청해진주유소																																																						
11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2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3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68-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4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	신일충전소																																																						
15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	신일충전소																																																						
16	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	신일충전소																																																						
	기간	2년																																																						
	규모	실증구역과 동일																																																						
	조건	<p>☐ (안전성 확보)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 설치 간이충전소에 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 마련 후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PG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변경허가, 기술검토, 완성검사 등)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① 실증특례 신청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허가를 받을 것② 액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술기준을 토대로 간이충전소 여건에 적합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실증기준안에 포함할 것③ 자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할 것 <p>*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변경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p>																																																						

□ (안전성 검증) 업계·학계·유관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실증내용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모니터링 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799-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 청해진주유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797-87-01574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93																																																					
	대표자	김종수																																																					
확인내용	명칭	농어촌·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실증																																																					
	주요내용	LPG 기반시설이 적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를 설치하여 간이충전소를 조성하고, LPG 자동차 충전 실증을 통한 안정성 및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제51조, 별표4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구역	전라남도 10곳, 경상북도 3곳, 강원도 3곳 총 16개소 중 6곳																																																					
		< 실증사업 예정지 >																																																					
		<table><tr><th>No.</th><th>사업부지 후보</th><th>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th><th>실증종별</th></tr><tr><td>1</td><td>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td><td>㈜청해진주유소</td><td rowspan="16">대한에너지협회</td></tr><tr><td>2</td><td>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td><td>㈜청해진주유소</td></tr><tr><td>3</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4</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5</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6</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곡리 1103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7</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td><td>㈜청해진주유소</td></tr><tr><td>8</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td><td>㈜청해진주유소</td></tr><tr><td>9</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td><td>㈜청해진주유소</td></tr><tr><td>10</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td><td>㈜청해진주유소</td></tr><tr><td>11</td><td>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2</td><td>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3</td><td>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68-3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4</td><td>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r><td>15</td><td>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r><td>16</td><td>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able>		No.	사업부지 후보	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	실증종별	1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	㈜청해진주유소	대한에너지협회	2	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	㈜청해진주유소	3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	미래LPG충전소	4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	미래LPG충전소	5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	미래LPG충전소	6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곡리 1103 일원	미래LPG충전소	7	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	㈜청해진주유소	8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	㈜청해진주유소	9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	㈜청해진주유소	10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	㈜청해진주유소	11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2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3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68-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4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	신일충전소	15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	신일충전소	16	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
No.	사업부지 후보	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	실증종별																																																				
1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	㈜청해진주유소	대한에너지협회																																																				
2	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	㈜청해진주유소																																																					
3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	미래LPG충전소																																																					
4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	미래LPG충전소																																																					
5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	미래LPG충전소																																																					
6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곡리 1103 일원	미래LPG충전소																																																					
7	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	㈜청해진주유소																																																					
8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	㈜청해진주유소																																																					
9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	㈜청해진주유소																																																					
10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	㈜청해진주유소																																																					
11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2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3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68-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4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	신일충전소																																																					
15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	신일충전소																																																					
16	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	신일충전소																																																					
기간	2년																																																						
규모	실증구역과 동일																																																						
조건	<div>☐ (안전성 확보)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 설치 간이충전소에 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 마련 후 적용</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LPG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변경허가, 기술검토, 완성검사 등)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① 실증특례 신청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허가를 받을 것② 액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술기준을 토대로 간이충전소 여건에 적합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실증기준안에 포함할 것③ 자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할 것</div> <div>*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변경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div>																																																						

□ (안전성 검증) 업계·학계·유관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실증내용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모니터링 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799-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신일충전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9-56-00499																																																				
	주소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885(홍제동)																																																					
	대표자	신광옥																																																					
확인내용	명칭	농어촌·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실증																																																					
	주요내용	LPG 기반시설이 적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를 설치하여 간이충전소를 조성하고, LPG 자동차 충전 실증을 통한 안정성 및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제51조, 별표4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구역	전라남도 10곳, 경상북도 3곳, 강원도 3곳 총 16개소 중 3곳																																																					
		< 실증사업 예정지 >																																																					
		<table><tr><th>No.</th><th>사업부지 후보</th><th>실증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th><th>실증종별</th></tr><tr><td>1</td><td>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d rowspan="16">대한유평지협회</td></tr><tr><td>2</td><td>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3</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4</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5</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6</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곡리 1103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7</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8</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9</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10</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11</td><td>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2</td><td>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3</td><td>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68-3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4</td><td>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r><td>15</td><td>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r><td>16</td><td>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able>		No.	사업부지 후보	실증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	실증종별	1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대한유평지협회	2	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3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	미래LPG충전소	4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	미래LPG충전소	5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	미래LPG충전소	6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곡리 1103 일원	미래LPG충전소	7	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8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9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0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1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2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3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68-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4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	신일충전소	15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	신일충전소	16	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
No.	사업부지 후보	실증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	실증종별																																																				
1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대한유평지협회																																																				
2	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3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	미래LPG충전소																																																					
4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	미래LPG충전소																																																					
5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	미래LPG충전소																																																					
6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곡리 1103 일원	미래LPG충전소																																																					
7	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8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9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0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1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2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3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68-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4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	신일충전소																																																					
15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	신일충전소																																																					
16	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	신일충전소																																																					
기간	2년																																																						
규모	실증구역과 동일																																																						
조건	<div>☐ (안전성 확보)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 설치 간이충전소에 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 마련 후 적용</div> <div>☐ LPG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변경허가, 기술검토, 완성검사 등)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div> <div><div>① 실증특례 신청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허가를 받을 것</div><div>② 액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술기준을 토대로 간이충전소 여건에 적합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실증기준안에 포함할 것</div><div>③ 자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할 것</div></div> <div>*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변경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div>																																																						

□ (안전성 검증) 업계·학계·유관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실증내용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모니터링 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799-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신일충전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9-56-00499																																																				
	주소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885(홍제동)																																																					
	대표자	신광옥																																																					
확인내용	명칭	농어촌·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실증																																																					
	주요내용	LPG 기반시설이 적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를 설치하여 간이충전소를 조성하고, LPG 자동차 충전 실증을 통한 안정성 및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제51조, 별표4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구역	전라남도 10곳, 경상북도 3곳, 강원도 3곳 총 16개소 중 3곳																																																					
		< 실증사업 예정지 >																																																					
		<table><tr><th>No.</th><th>사업부지 후보</th><th>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th><th>실증종별</th></tr><tr><td>1</td><td>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d rowspan="16">대한에너지협회</td></tr><tr><td>2</td><td>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3</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4</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5</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6</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곡리 1103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7</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8</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9</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10</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11</td><td>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2</td><td>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3</td><td>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08-3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4</td><td>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r><td>15</td><td>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r><td>16</td><td>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able>		No.	사업부지 후보	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	실증종별	1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대한에너지협회	2	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3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	미래LPG충전소	4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	미래LPG충전소	5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	미래LPG충전소	6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곡리 1103 일원	미래LPG충전소	7	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8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9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0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1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2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3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08-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4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	신일충전소	15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	신일충전소	16	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
No.	사업부지 후보	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	실증종별																																																				
1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대한에너지협회																																																				
2	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3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	미래LPG충전소																																																					
4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	미래LPG충전소																																																					
5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	미래LPG충전소																																																					
6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곡리 1103 일원	미래LPG충전소																																																					
7	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8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9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0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1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2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3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08-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4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	신일충전소																																																					
15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	신일충전소																																																					
16	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	신일충전소																																																					
기간	2년																																																						
규모	실증구역과 동일																																																						
조건	<div>☐ (안전성 확보)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 설치 간이충전소에 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 마련 후 적용</div> <div><div>○ LPG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변경허가, 기술검토, 완성검사 등)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div><div>① 실증특례 신청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허가를 받을 것</div><div>② 액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술기준을 토대로 간이충전소 여건에 적합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실증기준안에 포함할 것</div><div>③ 자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할 것</div></div> <div>*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변경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div>																																																						

□ (안전성 검증) 업계·학계·유관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실증내용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모니터링 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799-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미래LPG충전소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49-22-01846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983(신용동)																																																					
	대표자	정일호																																																					
확인내용	명칭	농어촌·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실증																																																					
	주요내용	LPG 기반시설이 적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를 설치하여 간이충전소를 조성하고, LPG 자동차 충전 실증을 통한 안정성 및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제51조, 별표4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구역	전라남도 10곳, 경상북도 3곳, 강원도 3곳 총 16개소 중 4곳																																																					
		< 실증사업 예정지 >																																																					
		<table><tr><th>No.</th><th>사업부지 후보</th><th>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th><th>실증종별</th></tr><tr><td>1</td><td>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d rowspan="16">대한에너지협회</td></tr><tr><td>2</td><td>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3</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4</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5</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6</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곡리 1103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7</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8</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9</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10</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11</td><td>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2</td><td>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3</td><td>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68-3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4</td><td>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r><td>15</td><td>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r><td>16</td><td>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able>		No.	사업부지 후보	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	실증종별	1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대한에너지협회	2	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3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	미래LPG충전소	4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	미래LPG충전소	5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	미래LPG충전소	6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곡리 1103 일원	미래LPG충전소	7	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8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9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0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1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2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3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68-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4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	신일충전소	15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	신일충전소	16	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
No.	사업부지 후보	실증사업 구축 및 운영관리	실증종별																																																				
1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대한에너지협회																																																				
2	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3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	미래LPG충전소																																																					
4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	미래LPG충전소																																																					
5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	미래LPG충전소																																																					
6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곡리 1103 일원	미래LPG충전소																																																					
7	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8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9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0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1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2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3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68-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4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	신일충전소																																																					
15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	신일충전소																																																					
16	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	신일충전소																																																					
기간	2년																																																						
규모	실증구역과 동일																																																						
조건	<div>☐ (안전성 확보)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 설치 간이충전소에 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 마련 후 적용</div> <div>☐ LPG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변경허가, 기술검토, 완성검사 등)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div> <div><div>① 실증특례 신청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허가를 받을 것</div><div>② 액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술기준을 토대로 간이충전소 여건에 적합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실증기준안에 포함할 것</div><div>③ 자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할 것</div></div> <div>*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변경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div>																																																						

□ (안전성 검증) 업계·학계·유관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실증내용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모니터링 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799-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스케이(SK)자산 LPG충전소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523(지산동)																																																					
	대표자	설동열																																																					
확인내용	명칭	농어촌·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실증																																																					
	주요내용	LPG 기반시설이 적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를 설치하여 간이충전소를 조성하고, LPG 자동차 충전 실증을 통한 안정성 및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제51조, 별표4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구역 전라남도 10곳, 경상북도 3곳, 강원도 3곳 총 16개소 중 3곳																																																					
		< 실증사업 예정지 >																																																					
	<table><tr><th>No.</th><th>사업부지 후보</th><th>실증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th><th>실증종별</th></tr><tr><td>1</td><td>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d rowspan="16">대한윙피지컬회</td></tr><tr><td>2</td><td>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3</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4</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5</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6</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곡리 1103 일원</td><td>미래LPG충전소</td></tr><tr><td>7</td><td>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8</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9</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10</td><td>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td><td>충청해진주유소</td></tr><tr><td>11</td><td>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2</td><td>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3</td><td>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68-3 일원</td><td>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td></tr><tr><td>14</td><td>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r><td>15</td><td>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r><td>16</td><td>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td><td>신일충전소</td></tr></table>		No.	사업부지 후보	실증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	실증종별	1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대한윙피지컬회	2	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3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	미래LPG충전소	4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	미래LPG충전소	5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	미래LPG충전소	6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곡리 1103 일원	미래LPG충전소	7	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8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9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0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1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2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3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68-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4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	신일충전소	15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	신일충전소	16	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	신일충전소
No.	사업부지 후보	실증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	실증종별																																																				
1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104-2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대한윙피지컬회																																																				
2	전남 신안군 임해읍 송곡리 430-2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3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794-1 일원	미래LPG충전소																																																					
4	전남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53-1 일원	미래LPG충전소																																																					
5	전남 완도군 고금면 농성리 471-3 일원	미래LPG충전소																																																					
6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곡리 1103 일원	미래LPG충전소																																																					
7	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2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8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토리 173-3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9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목리 484-1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0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570-7 일원	충청해진주유소																																																					
11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운리 582-7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2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53-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3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토리 668-3 일원	에스케이(SK)자산LPG충전소																																																					
14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4 일원	신일충전소																																																					
15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8 일원	신일충전소																																																					
16	강원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85-1 일원	신일충전소																																																					
	기간	2년																																																					
	규모	실증구역과 동일																																																					
	조건	<div>☐ (안전성 확보)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 설치 간이충전소에 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 마련 후 적용</div> <div>☐ LPG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변경허가, 기술검토, 완성검사 등) 및 다음 조건 모두 준수</div> <div><div>① 실증특례 신청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허가를 받을 것</div><div>② 액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술기준을 토대로 간이충전소 여건에 적합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실증기준안에 포함할 것</div><div>③ 자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충전소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할 것</div></div> <div>* 실증사업 중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충전소 설비 교체·변경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포함</div>																																																					

□ (안전성 검증) 업계·학계·유관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실증내용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모니터링 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0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파이온일렉트릭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51-86-00038	
	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에이동 1801호(일직동)	
	대표자	윤광희	
확인내용	명칭	주유소 내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주요내용	주유소 부지 내 ESS(바나듐이온배터리 활용)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을 실증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10조	
	구역	충남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69 주유소 1곳	
	기간	2년	
	규모	주유소 내 ESS를 포함한 전력안정화시스템 2기(도합 500kVA), 태양광발전 설비, 전기차충전기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유취급소’ 및 ‘ESS’ 상호간의 예견되는 위해성에 대해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최소한의 안전기준 확보 선행○ 산·학·연·관 전문가의 안전기준 적정성 검증 후 해당 안전기준을 반영한 실증사업 추진 필요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0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이치디하이드로젠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14층
	대표자	김성준
확인내용	명칭	
	연료전지의 사용전검사 완료 전 발생 전력의 자가사용	
	주요내용	
	연료전지의 사용전검사 완료 전 발생 전력의 공장 내 자가사용을 통한 효율성 및 안전성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 합격 후 사용 가능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제2항, 제9조 「전기사업법」 제61조 제1항, 제63조	
	구역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로 156번길 82, 에이치디하이드로젠 포승 공장	
	기간	
	2년	
	규모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285kW급 2기	
조건		
☐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연료전지 설비는 사용하기 전 사용전검사 합격 후 사용해야 함 ☒ 한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운전 등 용도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고 일시적 가동 가능 - 다만, 생산된 전력을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검사 기관의 안전상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사용 * 사용전원(저압), 발전용량(10,000kW 미만), 역송전·단독운전방지 등 ☒ 신청기업에서 제시한 실증지표를 준수하여 사용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검토의견)**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연료전지 설비는 사용하기 전 사용전검사 합격 후 사용해야 함
- 한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운전 등 용도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고 일시적 가동 가능
- 다만, 생산된 전력을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검사 기관의 안전상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사용
- * 사용전원(저압), 발전용량(10,000kW 미만), 역송전·단독운전방지 등
- 신청기업에서 제시한 실증지표를 준수하여 사용

[실증 목표(안)]

발체 번호	대상	지표명	단위	최종 실증목표	객관적 측정 방법	데이터 수집 방법
①	연료전지- 로드뱅크- 계통	전력 수치 일치	%	≥ 95%	연료전지 발전량 = 로드뱅크 소비전력량 + 소내전력량	전력량 로그 수집
②	계통 연계점 (PCC)	계통 유출 방지	kW	0 kW	전력계로 순시 유출 전력 측정, 평균·최대 편차 산출	전력량 로그 수집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0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06-82-0047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대표자	윤석대	
확인내용	명칭	수상태양광 부유식 수상전기실	
	주요내용	수상 태양광발전 전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유식 수상 전기실 및 전력변환 장치의 안전성 및 효율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부유식 수상전기실의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세부 규정 및 기준 부재 「전기사업법」 제61조, 제63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5]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구역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2-4 (보령댐 수상 태양광 발전부지)	
	기간	2년	
	규모	부유식 수상 전기실 2종 및 SST 전력변환 장치 1기	
	조건	☐ 해당설비 실증 시 검사기관의 안전상 요구사항을 준수할 경우 사용전검사 처리 가능 ☐ 향후, 부유식 구조물의 중량이 증가하는 등 부유식 수상전기실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과 동등한 시험 및 인증 등으로 통한 부유체 안전성 검증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현재, 수상태양광 부유식 수상전기실 및 SST* 전력변환 장치와 유사 설비가 없어 사용전검사 시 준용 가능한 검사기준은 없는 실정

* 전력반도체 적용을 통해 변압과 동시에 직류(DC)-교류(AC) 변환이 가능한 장치

- 다만, 해당설비 실증 시 검사기관의 안전상 요구사항을 준수할 경우 사용전검사 처리 가능

< 안전상 요구사항(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 >

- (설치조건) 제방 또는 댐 내측 공유수면에만 설치해야 하며, 사용전 안전을 확보(부유체 파손, 전기실 전복 및 전기설비 사고방지 등)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 ① (안전기준 준용) 전기설비 설치에 대한 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 등에서 정하는 설치기준 및 진동, 충격, 부식 등에 대한 기준 안전기준 준수
 - ② (추가 기준적용) 부유체 및 계류장치는 해수부 고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기, 출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부유식 해상구조물(전기실) 안전성 검증
 - ③ (추가 안전확보) 인입 전선로는 수중 전용케이블 사용
 - ④ (사고대책마련) 부유식 구조물 침몰(파손) 및 발·변전설비 사고 시 해양오염 방지, 인축의 감전방지 대책, 사고대처 및 후속 안전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비상연락망 구축
 - ⑤ (성능평가 강화) 부유식 전기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성능 평가항목 강화
 - ⑥ (추가 허가조건) 태풍, 강풍 등에 의해 부유식 해상 전기실이 파손될 경우 실증특례 종료
 - ⑦ (위험표시) 선박의 충돌, 전기안전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행정관청에서 발전소 설치를 허가받은 해상구역 경계면을 따라 접근금지 등 위험표시를 한 부표설치

□ 기타 의견

- 향후, 부유식 구조물의 중량이 증가하는 등 부유식 수상전기실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과 동등한 시험 및 인증 등으로 통한 부유체 안전성 검증 필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03-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국자동차연구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12-82-04676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대표자	진종욱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수소충전전술차량의 운용 실증	
	주요내용	이동식 수소 충전 전술차량의 수소 충전 성능·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제2항, 제22조의2 제1항제2호 (KGS AC417),(KGS AC418)	
	구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행산로 114 사서함 1호(육군 종합보급창)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통안리 산 84(육군 공병학교 실물 폭파훈련장)	
	기간	2년	
	규모	이동식 수소충전전술차량 2대(실증 1대, 예비 1대)	
	조건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실증안전기준)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고압가스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용기 검사기준에 관한 검토의견)**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압력 70MPa, 용량 179L의 복합재료 용기 운영 허용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기 검사받은 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국토부 검토 필요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고압가스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용기의 제조등록, 제조·검사 기준은 KGS AC421(이동수단용 압축수소 복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준용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평가,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검토 요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03-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현대로템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09-81-37486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488	
	대표자	이용배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수소충전전술차량의 운용 실증	
	주요내용	이동식 수소 충전 전술차량의 수소 충전 성능·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제2항, 제22조의2 제1항제2호 (KGS AC417),(KGS AC418)	
	구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행산로 114 사서함 1호(육군 종합보급창)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통안리 산 84(육군 공병학교 실물 폭파훈련장)	
	기간	2년	
	규모	이동식 수소충전전술차량 2대(실증 1대, 예비 1대)	
	조건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실증안전기준)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고압가스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용기 검사기준에 관한 검토의견)**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압력 70MPa, 용량 179L의 복합재료 용기 운영 허용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기 검사받은 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국토부 검토 필요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고압가스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용기의 제조등록, 제조·검사 기준은 KGS AC421(이동수단용 압축수소 복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준용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평가,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검토 요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03-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덕산에테르씨티 주식회사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17로 113
	대표자	위호선, 이수훈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수소충전전술차량의 운용 실증
	주요내용	이동식 수소 충전 전술차량의 수소 충전 성능·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제2항, 제22조의2 제1항제2호 (KGS AC417),(KGS AC418)
	구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행산로 114 사서함 1호(육군 종합보급창)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통안리 산 84(육군 공병학교 실물 폭파훈련장)
	기간	2년
	규모	이동식 수소충전전술차량 2대(실증 1대, 예비 1대)
	조건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실증안전기준)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고압가스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용기 검사기준에 관한 검토의견)**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압력 70MPa, 용량 179L의 복합재료 용기 운영 허용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기 검사받은 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국토부 검토 필요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고압가스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용기의 제조등록, 제조·검사 기준은 KGS AC421(이동수단용 압축수소 복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준용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평가,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검토 요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03-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기아 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9-81-02316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대표자	송호성, 최준영	
확인내용	명칭	이동식수소충전전술차량의 운용 실증	
	주요내용	이동식 수소 충전 전술차량의 수소 충전 성능·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제2항, 제22조의2 제1항제2호 (KGS AC417),(KGS AC418)	
	구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행산로 114 사서함 1호(육군 종합보급창)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통안리 산 84(육군 공병학교 실물 폭파훈련장)	
	기간	2년	
	규모	이동식 수소충전전술차량 2대(실증 1대, 예비 1대)	
	조건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실증안전기준)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고압가스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용기 검사기준에 관한 검토의견)**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압력 70MPa, 용량 179L의 복합재료 용기 운영 허용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기 검사받은 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국토부 검토 필요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이동형 수소충전 전술차량에 탑재되는 용기의 제조자는

「고압가스법」에 따른 등록, 검사 및 재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용기의 제조등록, 제조·검사 기준은 KGS AC421(이동수단용 압축수소 복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준용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평가,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제출·검토 요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0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38-81-08704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1층(봉산동)		
	대표자 조용돈		
확인내용	명칭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주요내용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된 트램 등 수소모빌리티 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구역 ①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290-46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289번지 일원		
	기간 2년		
	규모 트램 등 수소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기체 수소충전소 2곳		
	조건 ○ (종합)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특례 인정		
	<div> <div>⇒ (특례 부여내용) 기존 철도와의 거리 대신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에서 철도 '본선'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형태로 수소연료 충전시설 구축을 허용</div> <div>※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추진 중</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설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 사업자는 수소연료충전시설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설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안전관리계획에는 추가안전기준(안)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서는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div> <div><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 前) 안전성평가,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div> </div>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산업부기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타법준수) 동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실증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0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Mt.H콘트롤밸브주식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03-81-33920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296(송정동)	
	대표자	김재규	
확인내용	명칭 액화수소 밸브 상용화를 위한 성능 실증		
	주요내용 극저온(-253℃) 상태의 액화수소를 이송·저장하는 시스템의 핵심 제어기기로 사용되는 밸브 4종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액화수소용 밸브의 제조·검사 관련 기준 및 규격의 부재로 제품 개발 및 성능 검증 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7조,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KGS AA317), (KGS AA31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별표12]		
	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296		
	기간 2년		
	규모 안전밸브, 긴급차단밸브, 유량제어밸브, 역류방지밸브 각 5개		
	조건 <div>☐ (관리체계)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및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div> <div>☐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div> <div>☐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div> <div>☐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실증 시설·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div> <div>☐ (타법준수) 액화수소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div> <div>☐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div> <div>※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div>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고압가스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의 관리체계 준수하는 등 안전확보를 조건으로 액화수소 밸브 상용화를 위한 성능 실증을 허용

- (관리체계) 사업자는 임시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안전관리위원회가 검증 및 모니터링,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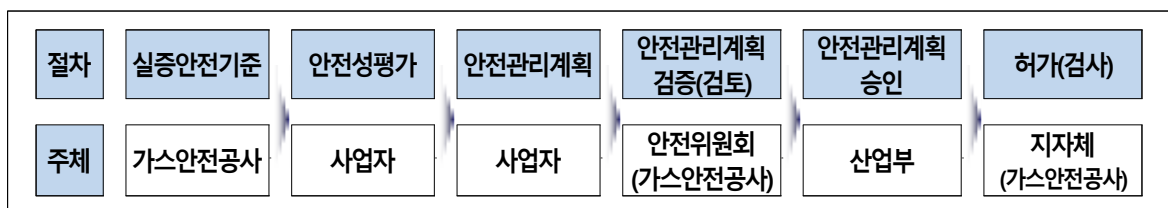
① (사업자)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액화수소 관련 「가스안전공사 실증안전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②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 확인

③ (검사기관) 액화수소 실증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절차 >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 '가스안전공사 실증안전기준'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관리방안을 포함

※ 안전관리방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준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안)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사업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허가 및 검사) 사업자는 액화수소 실증 시설·제품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을 받아야 함

* (시설) 기술검토, 사업허가, 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개시 신고 등
(제품) 국내·외 제품 제조시설의 제조등록, 제품검사 등

- (타법준수) 액화수소 실증사업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수소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액화수소 시설 및 제품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0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바이오프랜즈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512호	
	대표자	조원준	
확인내용	명칭	DC플라즈마 방식의 열분해 수소추출시스템 개발과 실증	
	주요내용	탄화수소(메탄, LPG)를 DC플라즈마 방식으로 열분해하여 수소와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수소추출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플라즈마로 탄화수소를 열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 부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6조, 제39조	
	구역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90-11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 1648-6	
	기간	2년	
	규모	DC플라즈마 방식을 활용한 열분해 수소추출시스템 1기	
	조건	<div>☐ (안전성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div> <div>☐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171(수소추출설비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와 플라즈마 공정과 고체 탄소 분리·회수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div> <div>☐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div> <div>☐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div> <div>☐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div> <div>☐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플라즈마 활용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div> <div>☐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div> <div>※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div>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플라즈마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플라즈마 열분해 수소추출설비 제조에 관한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부대조건 중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할 것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171(수소추출설비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와 플라즈마 공정과 고체 탄소 분리·회수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 법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44조(제품검사), 제51조(보험가입) 등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의 해소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플라즈마 활용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07-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4-82-04565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51번길 175-28	
	대표자	김선용	
확인내용	명칭	수소 생산용 플라즈마 기반 수소추출설비 실증	
	주요내용	하이브리드 메탄을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방식으로 열분해하여 수소와 카본블랙 등을 생산하는 시스템의 성능·안전성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플라즈마로 탄화수소를 열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 부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6조, 제39조	
	구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장산로 37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기술연구소)	
	기간	2년	
	규모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기반 열분해 수소추출시스템 1기	
	조건	<div>☐ (안전성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div> <div>☐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171(수소추출설비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와 플라즈마 공정과 고체 탄소 분리·회수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div> <div>☐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div> <div>☐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div> <div>☐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div> <div>☐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플라즈마 활용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div> <div>☐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div> <div>※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div>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플라즈마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플라즈마 열분해 수소추출설비 제조에 관한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부대조건 중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할 것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171(수소추출설비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와 플라즈마 공정과 고체 탄소 분리·회수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 법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44조(제품검사), 제51조(보험가입) 등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의 해소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플라즈마 활용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07-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대표자	오영국	
확인내용	명칭	수소 생산용 플라즈마 기반 수소추출설비 실증	
	주요내용	하이브리드 메탄을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방식으로 열분해하여 수소와 카본블랙 등을 생산하는 시스템의 성능·안전성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플라즈마로 탄화수소를 열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 부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4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6조, 제39조	
	구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장산로 37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기술연구소)	
	기간	2년	
	규모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기반 열분해 수소추출시스템 1기	
	조건	☐ (안전성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171(수소추출설비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와 플라즈마 공정과 고체 탄소 분리·회수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준수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플라즈마 활용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검토의견)** 사업자가 다음의 부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인정

⇒ **(특례 부여내용)** 플라즈마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증안전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플라즈마 열분해 수소추출설비 제조에 관한 실증을 허용

* 다만, 실증제품이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실증 후 사용·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 이 경우 부대조건 중 "자체검사"를 추가로 이행할 것

○ **(안전성 평가*)**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해소) 방안 도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

○ **(실증안전기준)**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171(수소추출설비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준용하되 안전성 평가 결과와 플라즈마 공정과 고체 탄소 분리·회수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 법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44조(제품검사), 제51조(보험가입) 등

○ **(안전관리계획*)**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의 해소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

*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 **(자체검사*)**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

* 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

-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 안전위원회의 주요 안전성 검증 내용 >

- (실증 前)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
- (실증 中)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승인 요청

- (타법준수)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플라즈마 활용 열분해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압력용기 등)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검사,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자료제공 협조)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0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엠에스바이오텍(주)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산길 25	
	대표자	주동관	
확인내용	명칭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한 제품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1항 제3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4조 및 제5조, 식품등의 표시기준 II.공통표시기준	
	구역	[생산] 신청기업(음성) / [판매] 고객사 유통망(온/오프라인)	
	기간	2년	
	규모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1개 제품	
	조건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와 관련한 안전성·품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GMP), 일반식품(축산물가공품)은 식품(축산물)제조가공업소(HACCP)에서 각각 현행 개별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할 것 - 제조할 제품에 대해 식약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 완료 후 제조할 것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일 경우 제조 불가 -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할 것 * 제품화 범위, 영업종류, 시설 및 위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신고(보고), 자가품질검사, 이력 추적관리, 표시·광고 및 심의,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제반사항 포함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시설과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구분·구획하거나, 구분·구획이 어려운 경우 작업시간을 달리하여 제조 -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융복합 제품을 제조한 경우 사용 전·후 세척·소독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기준 설정 ○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0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큐씨트코리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15-81-3978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2, 402-제이681호(대치동, H타워)	
	대표자	양경희	
확인내용	명칭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주요내용	국내(HACCP)/해외(GFSI) 식품규격인증을 모두 보유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HACCP 조사·평가와 민간인증기관의 GFSI 인증 사후관리를 통합하는 운영체계 (HACCP 조사·평가 면제)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약 50개 업체 내외	
	조건	<p><식품안전관리 민간인증기관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규제특례 실증사업 범위에 벗어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인증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의 GFSI 인증 규격¹⁾ 관련 획득정보 및 인증·사후관리 결과²⁾ 식약처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u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규격: FSSC 22000, BRCGS, IFS, SQF2) 인증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인증현황(품목, 업종 등),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결과(적합, 부적합 개선요구사항 등) 식약처 보고 의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GFSI 인증규격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보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인정기관 또는 GFSI 인증 재단 감사 결과 업무 중지 또는 취소이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요한 경우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보고 요구, 출입·현장조사, 서류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출한 사실 중 변경사항(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GFSI 규격범위, 인정기관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범사업 중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p>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p> <p>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p>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1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로이드인증원(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10-81-3541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2층 남산트라펠리스(남대문로 5가, T타워)	
	대표자	이일형	
확인내용	명칭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주요내용	국내(HACCP)/해외(GFSI) 식품규격인증을 모두 보유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HACCP 조사·평가와 민간인증기관의 GFSI 인증 사후관리를 통합하는 운영체계 (HACCP 조사·평가 면제)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약 109개 업체 내외	
	조건	<p><식품안전관리 민간인증기관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규제특례 실증사업 범위에 벗어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인증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의 GFSI 인증 규격¹⁾ 관련 획득정보 및 인증·사후관리 결과²⁾ 식약처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u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규격: FSSC 22000, BRCGS, IFS, SQF2) 인증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인증현황(품목, 업종 등),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결과(적합, 부적합 개선요구사항 등) 식약처 보고 의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GFSI 인증규격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보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인정기관 또는 GFSI 인증 재단 감사 결과 업무 중지 또는 취소이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요한 경우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보고 요구, 출입·현장조사, 서류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출한 사실 중 변경사항(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GFSI 규격범위, 인정기관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범사업 중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p>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p> <p>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p>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1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4-81-44779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8층(인사동, 태화빌딩)	
	대표자	임성환	
확인내용	명칭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주요내용	국내(HACCP)/해외(GFSI) 식품규격인증을 모두 보유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HACCP 조사·평가와 민간인증기관의 GFSI 인증 사후관리를 통합하는 운영체계 (HACCP 조사·평가 면제)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약 80개 업체 내외	
	조건	<p><식품안전관리 민간인증기관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규제특례 실증사업 범위에 벗어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인증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의 GFSI 인증 규격¹⁾ 관련 획득정보 및 인증·사후관리 결과²⁾ 식약처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u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규격: FSSC 22000, BRCGS, IFS, SQF2) 인증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인증현황(품목, 업종 등),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결과(적합, 부적합 개선요구사항 등) 식약처 보고 의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GFSI 인증규격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보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인정기관 또는 GFSI 인증 재단 감사 결과 업무 중지 또는 취소이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요한 경우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보고 요구, 출입·현장조사, 서류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출한 사실 중 변경사항(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GFSI 규격범위, 인정기관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범사업 중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p>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p> <p>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p>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1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앤에스에프코리아 유한회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17-81-81891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314호, 315호 (성수동2가, 생각공장데시앙플렉스)	
	대표자	조티 바신	
확인내용	명칭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주요내용	국내(HACCP)/해외(GFSI) 식품규격인증을 모두 보유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HACCP 조사·평가와 민간인증기관의 GFSI 인증 사후관리를 통합하는 운영체계 (HACCP 조사·평가 면제)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약 120개 업체 내외	
	조건	<p><식품안전관리 민간인증기관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규제특례 실증사업 범위에 벗어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인증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의 GFSI 인증 규격¹⁾ 관련 획득정보 및 인증·사후관리 결과²⁾ 식약처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u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규격: FSSC 22000, BRCGS, IFS, SQF2) 인증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인증현황(품목, 업종 등),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결과(적합, 부적합 개선요구사항 등) 식약처 보고 의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GFSI 인증규격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보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인정기관 또는 GFSI 인증 재단 감사 결과 업무 중지 또는 취소이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요한 경우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보고 요구, 출입·현장조사, 서류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출한 사실 중 변경사항(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GFSI 규격범위, 인정기관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범사업 중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p>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p> <p>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p>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1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4-81-28783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7(성수동2가, 아주디지털타워 1층)	
	대표자	김주용	
확인내용	명칭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주요내용	국내(HACCP)/해외(GFSI) 식품규격인증을 모두 보유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HACCP 조사·평가와 민간인증기관의 GFSI 인증 사후관리를 통합하는 운영체계 (HACCP 조사·평가 면제)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	
	구역	전국	
	기간	2년	
	규모	약 61개 업체 내외	
	조건	<p><식품안전관리 민간인증기관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규제특례 실증사업 범위에 벗어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인증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의 GFSI 인증 규격¹⁾ 관련 획득정보 및 인증·사후관리 결과²⁾ 식약처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ul style="list-style-type: none">1)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규격: FSSC 22000, BRCGS, IFS, SQF2) 인증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인증현황(품목, 업종 등),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결과(적합, 부적합 개선요구사항 등) 식약처 보고 의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GFSI 인증규격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보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인정기관 또는 GFSI 인증 재단 감사 결과 업무 중지 또는 취소이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요한 경우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보고 요구, 출입·현장조사, 서류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출한 사실 중 변경사항(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GFSI 규격범위, 인정기관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범사업 중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준수사항 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p>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p> <p>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p>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1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엠에프지코리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61-81-1639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06, 지하 1,2층(논현동, 곤비)	
	대표자 윤다예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용 음료(사료)를 즉석으로 제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를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을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사료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13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	
	구역	
	경산북도 경산시 옥산로 227, 지상 2층 ‘매드포갈릭 스타필드 경산점’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71-2 스타필드빌리지 1층 ‘매드포갈릭 스타필드 파주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3930-39, L2층, ‘매드포갈릭 스타필드 안성점’	
	기간 2년	
	규모 매드포갈릭 스타필드 경산점, 매드포갈릭 스타필드 파주운정점, 매드포갈릭 스타필드 안성점 총 3곳	
확인내용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 검토의견 : 수용	
	○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용 메뉴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 및 편의성을 증대한다는 취지에 공감	
	○ 통상적으로 사료 제조(가공 포함)를 위해선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사료관리법」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시설기준, 제조공정, 성분 등을 준수할 필요	
	○ 엠에프지코리아는 사료로 성분등록된 완제품을 제조(개봉·가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의 제조시설이나 성분등록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즉석조리하여 제공하고자 함	
	- 성분등록이 완료된 완제품의 섭취방법(주의사항 등) 등을 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사료제조업 등록이나 제조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	
	* 단, 펫밀크에 캐롭파우더를 첨가하는 행위에 대해선 불수용	
	- 사료 성분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매장 내에 안내문 등의 형태로 게시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음 가능	
	○ 메뉴 추가·변경되거나 제공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승인 필요	
확인내용	☐ 식약처 검토의견 : 조건부 수용	
	○ 신청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 강아지 스테이크 (혼합성 단미사료), 펫밀크(액상형 사료) 등 제품을 즉석 조리(단순가열, 휘핑)하여 반려동물 전용 메뉴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됨	
	○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조리하는 공간과 동물 전용인 사료를 취급하는 공간은 식품위생과 안전상 분리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음료 등 식품(사람용)에 사료(동물용)의 혼입 및 교차오염 우려	

○ 따라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용

- ①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조리대, 기구, 세척 도구 등 구분 사용
 - ② 식품과 사료 조리 등에 사용되는 원료 분리 보관
 - ③ 종사자가 사료 취급 후 식품을 취급할 경우 손 세척 및 장갑 등 교체 사용
 - ④ 조리 방법에 따라 사료가 튀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위생적 조치*
 - * 사료 조리대에 칸막이 설치, 뚜껑이 있는 휘핑기 사용 등
 - ⑤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등 기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1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삼식당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73-202143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진로 11, 1층(지축동)	
	대표자	이승열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진로 11, 1층(지축동)	
	기간	2년	
	규모	삼식당 1개소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를 하지 않은 업체는 신고관청에 영업신고○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ul style="list-style-type: none">*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 한정] 개, 고양이에 한정하여 출입 허용(이외의 동물 출입 금지)②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 전용 공간(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③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관리④ [사료 제조 공간 분리 등]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조리장 등)과 분리 등 조치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1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금수연남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39길 7(2층 연남동)	
	대표자	이유주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39길 7(2층 연남동)	
	기간	2년	
	규모	금수연남 1개소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를 하지 않은 업체는 신고관청에 영업신고○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	
		① [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 한정] 개, 고양이에 한정하여 출입 허용(이외의 동물 출입 금지)	
		②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 전용 공간(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	
		③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관리	
		④ [사료 제조 공간 분리 등]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조리장 등)과 분리 등 조치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1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삼청동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33-25-01956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12번길 45(101호 구래동)	
	대표자	김은미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12번길 45(101호 구래동)	
	기간	2년	
	규모	삼청동 1개소	
	조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를 하지 않은 업체는 신고관청에 영업신고 ○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		
	① [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 한정] 개, 고양이에 한정하여 출입 허용(이외의 동물 출입 금지)		
	②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 전용 공간(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		
	③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관리		
④ [사료 제조 공간 분리 등]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조리장 등)과 분리 등 조치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1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하삼동 해운대아이파크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70-85-02850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C1동 1층 117호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대표자	박성준, 한지혜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p>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p> <p>-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p>	
	유효기간	<p>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p> <p>*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p>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C1동 1층 117호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기간	2년	
	규모	하삼동커피 해운대아이파크점 1개소	
	조건	<p>○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를 하지 않은 업체는 신고관청에 영업신고</p> <p>○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p> <p>*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p>	
		<p>※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p>	
		<p>① [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 한정] 개, 고양이에 한정하여 출입 허용(이외의 동물 출입 금지)</p>	
		<p>②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 전용 공간(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p>	
		<p>③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관리</p>	
		<p>④ [사료 제조 공간 분리 등]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조리장 등)과 분리 등 조치</p>	
		<p>※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p> <p>○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p> <p>○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p>	
	공통조건	<p>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p>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19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파비에앤카페 파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50-39-01211	
	주소	경기도 시흥시 목감우회 39, 210호(목감동, 목감 시티프라자)	
	대표자	박경숙	
확인내용	명칭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주요내용	소비자가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동반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출입 허용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구역	경기도 시흥시 목감우회 39, 210호(목감동, 목감 시티프라자)	
	기간	2년	
	규모	파비에앤카페 파우 1개소	
	조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를 하지 않은 업체는 신고관청에 영업신고 ○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24.4월 개정된 내용 반드시 확인	
		※ 가이드라인 중 주요 관리 사항	
		① [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 한정] 개, 고양이에 한정하여 출입 허용(이외의 동물 출입 금지)	
		②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 전용 공간(케이지 등) 외에서는 상시 목줄을 착용하고 목줄 고정 시설에 고정	
		③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단벽 등 설치·관리	
		④ [사료 제조 공간 분리 등]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공간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시설(조리장 등)과 분리 등 조치	
		※ 관련법령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실증장소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업의 등록, 제조하는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 사료의 표시사항 등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20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리안헤어블랙압구정로데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56-19-0224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7길 25 (신사동) 3층	
	대표자	이수민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가목	
	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7길 25 (신사동) 중 일부	
	기간	2년	
	규모	공유미용실 1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동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21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머즈헤어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81-16-02257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3로 56 (예천동) 2층	
	대표자	한영은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가목	
	구역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3로 56, 2층(예천동, 신우빌딩)	
	기간	2년	
	규모	공유미용실 1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동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동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22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미랑컬헤어 상동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30-42-78885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9 부천상동수석프라자 202호	
	대표자	김흥수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가목	
	구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9 부천상동수석프라자 202호	
	기간	2년	
	규모	공유미용실 1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23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비글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77-86-03615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14, 3층(서교동, 엠제퍼스트홍대)	
	대표자	이웅장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 가목	
	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14, 3층(서교동, 엠제퍼스트홍대)	
	기간	2년	
	규모	공유미용실 1개소	
	조건	<p>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p> <p>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p> <p>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p> <p>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p>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p>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p> <p>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p>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24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에이치와이유니버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56-88-0321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0길 22 (신사동) 2층	
	대표자	김영주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가목	
	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0길 22 (신사동) 2층	
	기간	2년	
	규모	공유미용실 3개소	
	조건	<p>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p> <p>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p> <p>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p> <p>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p>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25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오렌지헤어	사업자(법인)등록번호 239-37-00375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로 66, 2층	
	대표자	고종현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1제1호, 제2호 기목	
	구역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로66, 2층 (*26년 1월 사업장 이전 예정 : 제주도 서귀포시 동흥로 102, 리움오피스텔 1층)	
	기간	2년	
	규모	공유미용실 1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26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더얼론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05-86-03478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9 (만촌동, 만촌역 태왕디아너스) 304동 119호	
	대표자	최보필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가목	
	구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9 (만촌동, 만촌역 태왕디아너스) 304동 119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로 104, 2층	
	기간	2년	
	규모	공유미용실 2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27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피27	사업자(법인)등록번호 887-88-00900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9-1, 3층(재송동)	
	대표자	신하균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1제1호, 제2호 기목	
	구역	1차년도 : 부산시 해운대 소재 매장 1곳 예정 2차년도 : 부산시 해운대 소재 매장 1곳, 서울시 강남 소재 매장 1곳, 경기도 소재 매장 1곳 예정	
	기간	2년	
	규모	공유미용실 3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제828호		규제특례 확인 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주식회사 글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597-87-02503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512-3 정예빌딩 3층	
	대표자	허성해	
확인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주요내용	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미용사가 1개의 사업장 내에서 미용시설 및 장비, 공간을 공유하는 미용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가목	
	구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512-3 정예빌딩 3층	
	기간	2년	
	규모	[1차년도] 부산시 5개소, 경상도 5개소 [2차년도] 부산시 10개소, 경상도 10개소	
	조건	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공동책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영업신고)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가이드라인)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법 제10조의4 제5항, 법 제10조의5 제4항)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임시허가서

제59호		허가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이진뷰티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44-87-00626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54번길 36 (중동)	
	대표자	조은임	
임시허가 내용	명칭	공유미용실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	
	주요내용	1개 영업장 내 다수 사업자(미용사)가 입주해 공용시설(샴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조건	<div>- 안전한 공유미용실 운영을 위한 사업장 자체 시설·설비 가이드라인(관리기준) 마련·제출 및 실증 특례기간 동안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div> <div>- 실증특례 부여시 조건 유지를 전제함</div> <div>①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div> <div>②「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div> <div>③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 미이행 시 임시허가 취소</div>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임시허가서

제60-1호		허가연월일	2025년 12월 29일
신청인	이름(회사명)	LG전자(주)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07-86-14075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여의도동)	
	대표자	류재철	
임시허가 내용	명칭	상업용 CO2 세탁기	
	유효기간	2026. 1. 26. ~ 2028. 1. 25.	
	주요내용	액체 CO2(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활용하는 상업용 세탁기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체계 및 아래의 부대조건(첨부 세부 부대조건 포함)을 준수- (세탁기 제품) 일정한 설계에 따라 제조됨에 따라 고압가스 “제품(특정설비)”으로 구분하여 제품 제조기준을 마련하고 특정설비 제조자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준수<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설비 제조등록, 제품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규정, 보험가입 등- (세탁기 운영) 세탁기 설치·운영 시설은 완화된 “일반제조시설”로 구분하여, 완화된 일반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준수<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소화된 시설기준(가스누출경보기 설치, 배기덕트 설치 등) 적용, 일반제조시설 허가,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 등), 시설검사, 안전관리규정, 보험가입 등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 제6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 (제품제조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등록, 제조시설 및 제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아래 참조)를 준수하여야 함

구분		특정설비 제조등록·제품제조(제조사_LG전자)	대상기관
제조기준		· 사업자는 임시허가를 위한 제품 제조기준을 마련하여 공사의 검토를 거쳐 산업부 승인을 받을 것	사업자→ 공사, 산업부
기술검토		· 사업자는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기술검토를 받을 것	사업자→ 공사
제조등록		· 사업자는 기술검토 결과 서류 및 그 밖의 제조등록을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조등록 신청을 할 것 ※ 허가관청은 제조등록증의 특정설비 품목란에 “액화이산화탄소 세정설비”로 기재하여 교부	사업자→ 시·군·구청
완성검사		· 제조시설 설치 후, 임시허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 합격증을 교부 받을 것	사업자→ 공사
보험가입		· 특정설비 제조자에 따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것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 특정설비 제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공사의 심사를 받아, 허가관청에 제출할 것	사업자→ 공사, 시·군·구청
안전관리자		· 특정설비 제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및 허가관청에 선임 신고를 할 것	사업자→ 시·군·구청
사업개시 신고		· 모든 법적인 준비 절차를 마친 후 허가관청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할 것	사업자→ 시·군·구청
제품 검사	설계	· 생산제품 모델별 설계단계검사를 받을 것	공사
	생산	· 모든 생산제품은 생산단계검사를 받을 것	공사

□ (일반제조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및 다음의 추가 안전기준을 준수

구분		완화된 일반제조시설(설치·사용자_의식주컴퍼니)	대상기관
시설 기준	사고예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다만, 아래의 사고예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안전거리는 적용 제외) <사고예방설비 : 이산화탄소 검지기, 강제환기설비, 방출관(덕트) 설치> 	사업자
기술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는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을 것 	사업자→공사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는 기술검토 결과 서류 및 그 밖의 제조허가를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허가 신청을 할 것 	사업자→시·군·구청
완성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설치 후,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 합격증을 교부 받을 것 	공사
보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 따른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할 것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공사의 심사를 받아, 허가관청에 제출할 것 	사업자→공사, 시·군·구청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허가관청에 선임 신고를 할 것. 다만, 처리능력이 60 m³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은 선임 면제 ※ 허가관청은 안전관리자 자격 구분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를 “액화이산화탄소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로 보아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수리 	사업자→시·군·구청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화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LG전자의 자체 안전교육 (안전 운전요령, 점검방법, 긴급 시 조치방법 등 포함)을 수강(LG전자는 교육 후 수강확인서 발급)할 것 ※ 향후 액화이산화탄소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신설 시, 해당 특별교육을 재이수 	사업자→공사, LG전자
사업개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법적인 준비 절차를 마친 후 허가관청에 사업개시 신고를 할 것 	사업자→시·군·구청
정기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는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율검사를 받고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를 받을 것 	사업자→공사

- (제품제조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등록, 제조시설 및 제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아래 참조)를 준수하여야 함

구분		특정설비 제조등록·제품제조(제조사_LG전자)	대상기관
제조기준		· 사업자는 임시허가를 위한 제품 제조기준을 마련하여 공사의 검토를 거쳐 산업부 승인을 받을 것	사업자→ 공사, 산업부
기술검토		· 사업자는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기술검토를 받을 것	사업자→ 공사
제조등록		· 사업자는 기술검토 결과 서류 및 그 밖의 제조등록을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조등록 신청을 할 것 ※ 허가관청은 제조등록증의 특정설비 품목란에 “액화이산화탄소 세정설비”로 기재하여 교부	사업자→ 시·군·구청
완성검사		· 제조시설 설치 후, 임시허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 합격증을 교부 받을 것	사업자→ 공사
보험가입		· 특정설비 제조자에 따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것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 특정설비 제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공사의 심사를 받아, 허가관청에 제출할 것	사업자→ 공사, 시·군·구청
안전관리자		· 특정설비 제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및 허가관청에 선임 신고를 할 것	사업자→ 시·군·구청
사업개시 신고		· 모든 법적인 준비 절차를 마친 후 허가관청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할 것	사업자→ 시·군·구청
제품 검사	설계	· 생산제품 모델별 설계단계검사를 받을 것	공사
	생산	· 모든 생산제품은 생산단계검사를 받을 것	공사

□ (일반제조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및 다음의 추가 안전기준을 준수

구분		완화된 일반제조시설(설치·사용자_의식주컴퍼니)	대상기관
시설 기준	사고예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다만, 아래의 사고예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안전거리는 적용 제외) <사고예방설비 : 이산화탄소 검지기, 강제환기설비, 방출관(덕트) 설치> 	사업자
기술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는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을 것 	사업자→공사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는 기술검토 결과 서류 및 그 밖의 제조허가를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허가 신청을 할 것 	사업자→시·군·구청
완성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설치 후,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 합격증을 교부 받을 것 	공사
보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 따른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할 것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공사의 심사를 받아, 허가관청에 제출할 것 	사업자→공사, 시·군·구청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허가관청에 선임 신고를 할 것. 다만, 처리능력이 60 m³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은 선임 면제 ※ 허가관청은 안전관리자 자격 구분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를 “액화이산화탄소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로 보아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수리 	사업자→시·군·구청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화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LG전자의 자체 안전교육 (안전 운전요령, 점검방법, 긴급 시 조치방법 등 포함)을 수강(LG전자는 교육 후 수강확인서 발급)할 것 ※ 향후 액화이산화탄소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신설 시, 해당 특별교육을 재이수 	사업자→공사, LG전자
사업개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법적인 준비 절차를 마친 후 허가관청에 사업개시 신고를 할 것 	사업자→시·군·구청
정기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는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율검사를 받고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를 받을 것 	사업자→공사